

양주회천 A25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11.27.]

■ 건설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338번지 일원 양주회천 A25BL 영구임대주택 472호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472호) 및 국민임대주택(1,00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현재 양주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양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양주회천 A25블록 영구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2025000608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 내의 모든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시. 미성년은 2006.11.28. 이후 출생자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1960.11.27. 이전 출생자)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공급호수				영구임대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26A	26.10	15.2009	41.3009	2.4738	11.3480	55.1227	389	-	101	288	2501 2505 2507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	'26.9월 (예정)			
26A1 (주거약자)							83	83	-	-						

- 26A1형(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일부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벽걸이에어컨, 가스쿡탑 등)이 설치되며,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적용 구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6A	「가」군	2,764,000	138,000	2,626,000	55,040	(+) 5,000,000	7,764,000	30,040	
						(-) 1,000,000	1,764,000	57,950	
26A1	「나」군	19,524,000	976,000	18,548,000	137,590	(+) 16,000,000	35,524,000	57,590	
						(-) 15,000,000	4,524,000	181,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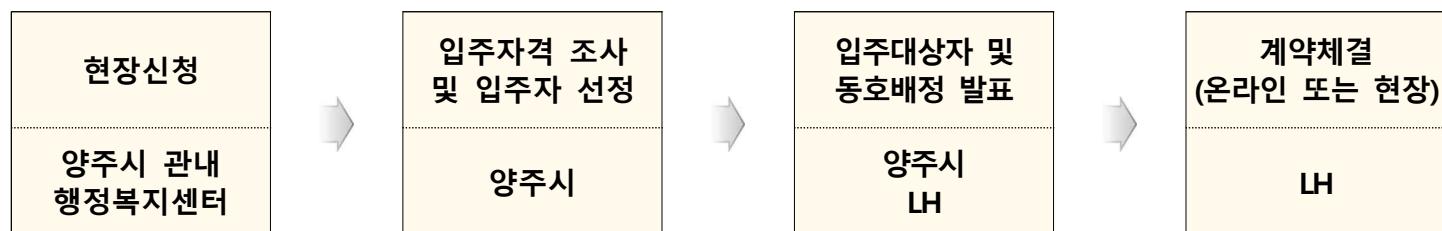
2.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25.12.15(월) ~ '25.12.19(금) (10:00~17:00)	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6.4.23(목) 17:00 이후 양주시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26.5.12(화) ~ '26.5.14(목) ※ 현장 계약장소 별도 안내

- 신청접수는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예비입주자 종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시 :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에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border="1"><thead><tr><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thead><tbody><tr><td>• 신청자</td><td></td></tr><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td></tr><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td></tr><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tbody></table>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small>*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small>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 6.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 7.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주거약자용 주택(26A1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p>1.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p>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p>3.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p>1.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입주자격</p> <p>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p> <p>2. 총자산 기준</p> <p>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p> <p>3. 자동차 기준</p> <p>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p> <p>*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p> <p>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 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37,000,000	45,630,000
	2인	0인	60%	237,000,000	45,630,000
		1인	70%	261,000,000	50,200,000
	3인 이상	0인	50%	237,000,000	45,630,000
		1인	60%	261,000,000	50,200,000
		2인 이상	70%	285,000,000	54,760,000
나. 국가유공자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37,000,000	45,630,000
	2인	0인	80%	237,000,000	45,630,000
		1인	90%	261,000,000	50,200,000
	3인 이상	0인	70%	237,000,000	45,630,000
		1인	80%	261,000,000	50,200,000
		2인 이상	90%	285,000,000	54,760,000
타. 장애인(2순위)	1인	0인	120%	237,000,000	45,630,000
	2인	0인	110%	237,000,000	45,630,000
		1인	120%	261,000,000	50,200,000
	3인 이상	0인	100%	237,000,000	45,630,000
		1인	110%	261,000,000	50,200,000
		2인 이상	120%	285,000,000	54,760,000

* 출생(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자녀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99,082	2,158,898	2,518,715	2,878,531	3,238,348	3,598,164	3,957,980	4,317,797
2인	2,738,502	3,286,202	3,833,902	4,381,602	4,929,303	5,477,003	6,024,703	6,572,404
3인	3,813,487	4,576,184	5,338,881	6,101,578	6,864,276	7,626,973	8,389,670	9,152,368
4인	4,289,044	5,146,853	6,004,662	6,862,470	7,720,279	8,578,088	9,435,897	10,293,706
5인	4,515,524	5,418,629	6,321,734	7,224,838	8,127,943	9,031,048	9,934,153	10,837,258
6인	4,866,543	5,839,852	6,813,160	7,786,469	8,759,777	9,733,086	10,706,395	11,679,703
7인	5,217,562	6,261,074	7,304,587	8,348,099	9,391,612	10,435,124	11,478,636	12,522,149
8인	5,568,581	6,682,297	7,796,013	8,909,730	10,023,446	11,137,162	12,250,878	13,364,594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호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입주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기준일('23.3.28.)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를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 소득 및 자산 확인·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금액은 신청자의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 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차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구분	산정방법
	<p>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small>(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 ·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1.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계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26A	101	48	5	48
				별도배정 호수 없음*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등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구분	내용	임대조건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사람 * 국가보훈부의 선정 기준에 따르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그 외 : 「나」군
다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가」군
마목	다목(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다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순위		추첨
		2, 3순위	배점 →	추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기준표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미성년 자녀 수(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양주시 연속 거주 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④ 혼인기간(신혼부부만 적용)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⑤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적용)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자녀의 나이 배점을 선택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3.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양주회천 A25블록 영구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5000608]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일반공급용] 일반공급 → 주택명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내역확인 후 발급신청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4-2.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대상자

※ 입주자격 내용 중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함**

순위	입주자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그 외 : 「나」군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2순위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그 외 : 「나」군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그 외 : 「나」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1, 2호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제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양주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p>▶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현재까지 연속하여 양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양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p>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p>▶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기준 연령을 말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 <th>출생연도</th> </tr> </thead> <tbody> <tr> <td>40세 미만</td> <td>1985.11.28. 이후 출생</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1975.11.28. 이후 출생</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1965.11.28. 이후 출생</td> </tr> <tr> <td>60세 이상</td> <td>1965.11.27. 이전 출생</td> </tr> </tbody> </table>	연령	출생연도	40세 미만	1985.11.28. 이후 출생	40~50세 미만	1975.11.28. 이후 출생	50~60세 미만	1965.11.28. 이후 출생	60세 이상	1965.11.27. 이전 출생
연령	출생연도												
40세 미만	1985.11.28. 이후 출생												
40~50세 미만	1975.11.28. 이후 출생												
50~60세 미만	1965.11.28. 이후 출생												
60세 이상	1965.11.27. 이전 출생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무주택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1~2인	24	<p>▶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공고문 [3. 신청자격]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p>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p>▶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4-3. 주거약자용 주택(26A1형)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 입주자격 내용 중 '수급자'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함

순위	입주자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p>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p> <p>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p>「가」군</p> <p>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p> <p>그 외 : 「나」군</p>
2순위	<p>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p> <p>그 외 : 「나」군</p>
3순위	<p>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p> <p>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p> <p>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p>	<p>「나」군</p> <p>「가」군</p> <p>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p> <p>그 외 : 「나」군</p>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그 외 : 「나」군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그 외 : 「나」군

■ 주거약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합계		10						
1. 양주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현재까지 연속하여 양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양주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2. 공급신청자 나이 (2점)	70세 이상	2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65세~70세 미만	1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기준 연령을 말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연령</th> <th>출생연도</th> </tr> <tr> <td>70세 이상</td> <td>1955.11.27. 이전 출생</td> </tr> <tr> <td>65~70세 미만</td> <td>1960.11.27. 이전 출생</td> </tr> </table>	연령	출생연도	70세 이상	1955.11.27. 이전 출생	65~70세 미만
연령	출생연도							
70세 이상	1955.11.27. 이전 출생							
65~70세 미만	1960.11.27. 이전 출생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2점)	2인 이상 (신청자 본인 포함)	2	▶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공고문 [3. 신청자격]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4. 장애등급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5.11.27.) 이후 발생분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아래 구비서류,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여 접수장소(양주시 내 행정복지센터)로 내방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예비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6 공사서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 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할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양식6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양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 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각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p>※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p>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p>※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p> <p>※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p>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p>※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p>※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상자	<p>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격, 배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 등을 위해 태아 또는 입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p>출생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p>청약순위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등 우선공급) 청약관련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택관리번호 2025000608] <p>기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1통

■ 신청자격 및 배점 증명서 (해당자 제출 필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内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행정복지센터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태아를 세대구성원, 미성년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해당자) 임신진단서(확인서) (해당자) 출생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임대조건 「가」군 해당자 중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①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자 등의 증빙서류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신청 후 수령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영구임대 신청 시점에 제출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함)	보훈(지)청 행정복지센터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공통 제출서류로 갈음)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2026.4.23(목) 17:00 이후
 -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및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사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 및 공사 개별 안내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입주대상자 개별 안내문 발송 예정으로 계약장소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 안내문 참고)

- 현장계약 [계약기간: 2026.5.12.(화) ~ 5.14.(목)]
- 유의 사항
 - 입주대상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입주자격 부적격에 대한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7.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무허가건축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주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신청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간 중 양주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 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 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부 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쪽으로 1호선(경원선)이 지나가며, 화물열차 및 전철의 통행으로 소음이 수시로 발생함
- 아파트 남서측 방향 약 300m 내외 거리에 제척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음
- 아파트 남측 약 800m 내외 거리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여건

- 단지 내·외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국민임대주택이 1,002세대, 영구임대주택이 472세대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쪽으로는 1호선(경원선)이 위치하여 전철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쪽으로는 고덕로 도로(고가도로 포함)가 위치하여 인접동(2501동, 2503동, 2505동)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구 및
단지 여건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용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단지는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또는 법면 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용벽 등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용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2501, 250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외부도로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상,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출입구에 인접한 동(2501동, 2502동, 2503동, 2505동, 2506동 등)은 1층과 저층부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경사로 등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도로, 보도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동 표시·아파트 문양·BI 로고·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층동(2501, 2503, 2505, 2507동)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가 접근되지 않을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대지경계 부분에 조경석, 식수대, 울타리, 가로수 등이 설치되어 보행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671대, 지상 42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6대이며, 총 1,106대 중 33대는장애인 주차장, 58대는 경형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에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54대 설치 예정이며 지상에는 설치되지 않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나, 이용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는 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협의 및 운영하여야 하므로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함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안전운행과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유도등이 설치되며, 주차공간별 주차유도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5층 규모임
- 당 아파트는 중복도형으로서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2501동은 서향(1~5호), 동향(6~12호)으로 시공됨
- 2505동, 2507동은 서향(1~7호), 동향(8~12호)으로 시공됨
- 2501동 필로티(1층), 2502동 필로티(1층), 2503동 필로티(1층), 2504동 필로티(1층) 어린이집, 2505동 필로티(1층) 2506동과 연결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2506동 필로티(1층), 2507동 필로티(1층), 2508동 필로티(1층), 2509동 필로티(1층)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도서관), 2510동 필로티(1층)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 놀이터 포함)과 연결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우편함은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획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임대함
- 에어컨 실외기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제품사양에 따라 미서기창 탈착 후 발코니에 반입 가능함
-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중 일부 과대한 크기의 경우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일부 세대 발코니에는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일부 발코니 입상관 상부 주변 천정에 단차가 생겨 마감됨
- 주거동 주출입구는 주로 치장벽돌(와이드벽돌)으로 시공되며, 일부 석재질감의 도장 혹은 미장 등으로 마감되며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함

- 지붕은 전체동이 평지붕으로 계획되었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됨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
-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됨에 따라 내부 벽체는 건식 세대경계벽 및 세대 각실간 벽은 석고보드 복합판넬, 이외벽(복도↔세대내부, 발코니↔거실,침실)은 경량콘크리트 패널로 시공되어 벽부착물 설치등 고정용 못을 박을 때 주의를 요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2502동, 2506동, 2508동 옥상층에는 옥상 정원이 설치되며 각각 2501동, 2505동, 2507동과 연결되는 옥상 브릿지가 설치되며, 조경이 계획되어 있으나, 비상대피용 방화문이 설치되어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함. 해당시설 이용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는 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 및 운영하여야 함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배수펌프 가동으로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전기의 주기적 및 비상시 가동으로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전기실, 발전기실 설치위치 : 2501동, 2503동 주변 지하]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설치위치 : 2501동, 2503동 주변 지하]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생활자원보관소(총 9개소, 상가 1개소 포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생활자원보관소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아파트 각 층 승강기홀 및 계단실 채광·환기창의 설치여부와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 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음
- 계단실 및 승강기 홀, 복도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 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 쿡탑은 전기 하이라이트 방식이 적용되며 26형은 2구형으로 설치됨
-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미설치되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판은 타입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및 플렉시블 덕트가

- 노출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과됨
 - 실외기실에는 실내환기를 위한 전열교환장치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드레인을 위한 바닥 배수트랩이 설치되어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배수트랩 및 드레인배관은 타입별, 층수별로 설치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26형 발코니는 건식 발코니로 수전 및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외부 창호는 입면분할창으로 하부 창호의 개폐가 불가하며, 이사 사다리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복도 PD내부에 설치예정임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단 세대내부에는 PD점검구 대신 점검홀 설치)
 - 26형은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됨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난방, 수도 등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여 조회함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설치예정되며, 일부 인접 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승강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 내외부 마감사양은 제조사가 상이함에 따라 각 동별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고, 2501, 2503, 2505, 2507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501, 2503, 2505, 2507, 2509, 2510등 옥상층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됨
 - 세대분전반은 현관입구 벽면에 매입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어 위치이동은 불가능함
 - 발코니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등으로 설치됨
 - 발코니, 실외기실(대피공간)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주차장 각 동 출입구 부근에 설치될 예정임(단,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 부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생활자원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응급상황 대비용 동작감지기는 전세대 거실 또는 침실 1개소에 설치됨

-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단말기(비디오플7"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환기제어,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통화서비스(욕실비상콜:주거약자세대에 한함),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 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복도형)에는 E/V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 복도에는 차압 감지관이 설치됨
-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 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2501동, 2503동, 2505동, 2507동 옥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합니다.
- * 공청 및 위성 안테나 설치 위치
 - 2503동 옥탑층에 설치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 지하주차구간 높이는 2.4m입니다.

■ 학생 배치 관련 사항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초등학생은 도둔초, 중학생은 회천 중학군, 고등학생은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배치여건에 따라 원거리 통학,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중학군(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천중학군은 **덕계중, 덕정중, 고암중, 회천중, (가칭)회천4중**을 의미합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돋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또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양주회천 A-25BL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현장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상기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 벽 재사용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교통부하저감	도시 중심 및 지역 중심과 단지 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공용부분	★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 계획의 합리 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 여부	구 分	적용 여부
측벽(=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주회천 A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주)금강주택 (211-81-81882) 한일개발(주) (129-81-45758) 성일기계(주) (120-81-46027) 두원이에프씨(주) (214-81-04884) 영승전력(주) (217-81-15115) (주)한국해양기술 (220-81-27790) 대보정보통신(주) (135-81-19406) 성민전기(주) (119-86-32979) 대상건설(주) (126-81-45685) (주)건국이엔아이 (206-81-51902) (주)진진 (539-88-00753) (주)시티건설 (211-88-79240) 제후건설(주) (408-81-25922)	-	(주)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나라기술단 (주)해우이엔지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률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미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거실	비디오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비디오플 점자표지	비디오플(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시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플 설치	
	거실 조명밝기 600~900lux, 침실조명 밝기 300~400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야간센서 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동작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의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모든 세대에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동작감지기)를 제공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통 유의사항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신청기간 : 개별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내
- 편의시설 신청방법 : 계약안내 시 송부받은 신청서 및 아래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 등기우편 제출주소 :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양주회천 A25 담당자 앞(우편번호 : 11787)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지원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 ·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p>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달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p>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p> <p>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자산	<p>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p> <p>예금, 적금, 부금, 예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문의처	양주시청 및 양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당첨자 ARS	1661-7700
리플렛 배부처	양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패·부조리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27.



경기북부지역본부